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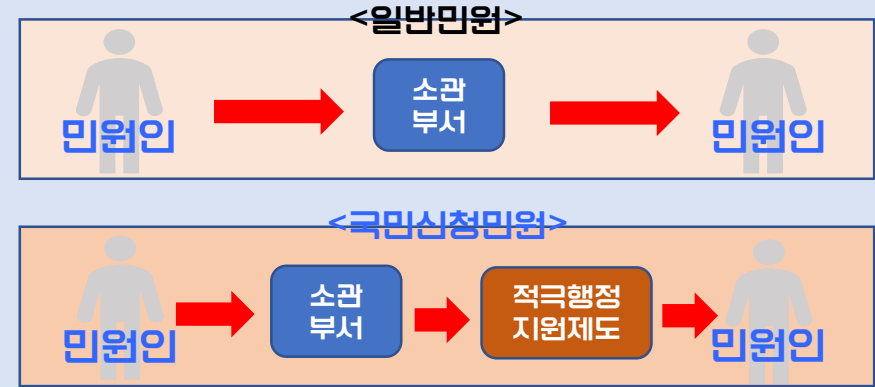
안녕하세요! 정읍시 캐릭터 단이입니다.
오늘은 적극행정에 유익한 제도인
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에 대해서
알려드리겠습니다.



적극행정 국민신청 (2021.7.27. 시행)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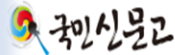
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국민이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
적극행정 지원제도*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
신청하는 제도입니다.



2

* 적극행정 지원제도 : 사전컨설팅, 적극행정 의경제시제도

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



민원

국민제안

예산낭비

국민생

민원

국민의 작은 의견도
소중히 여기는
국민소통창구



일반민원

적극행정 국민신청

소극행정 신고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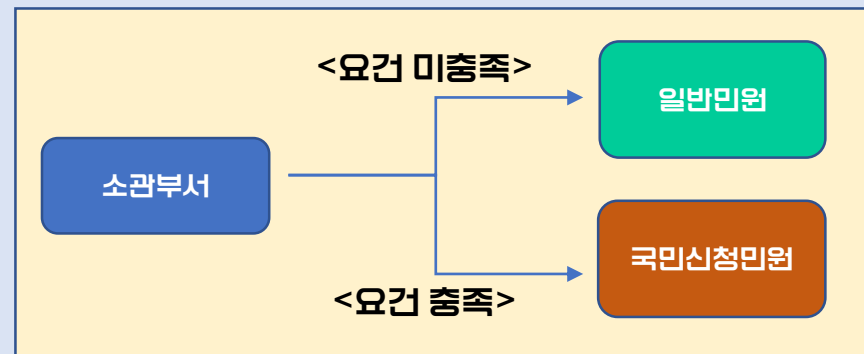
감질피해 신고센터

민원이나 국민제안을
신청했으나
법령이 없거나
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
거부나 불채택 통지를 받은
개인 또는 법인이
신청*할 수 있습니다.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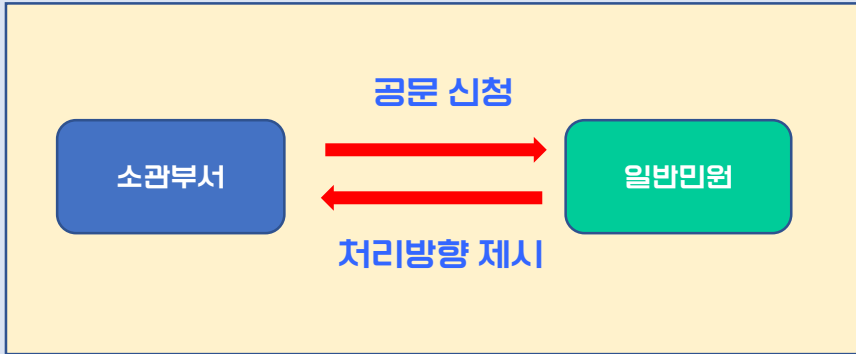
4

국민신청이 접수되면 소관부서에서는
요건충족 여부와 처리 제외 사유를 판단해서
요건 미충족, 처리 제외 사유 시
일반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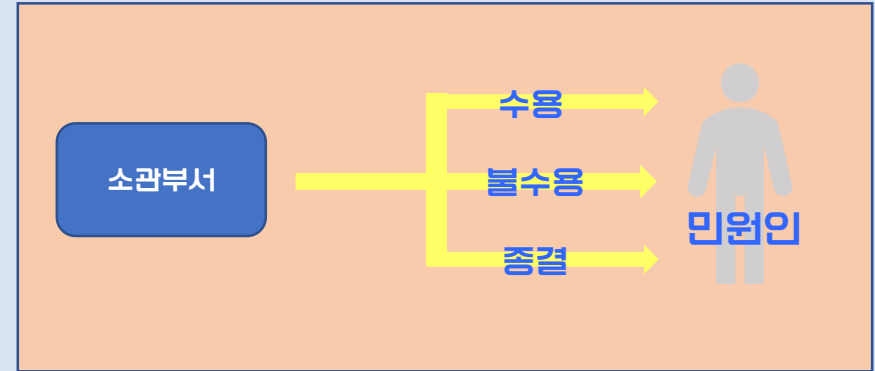
* 대상과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

국민신청민원 처리 요건이 충족된 경우
 소관부서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
 필요 시 감사위원회에 공문으로 신청하고,
 감사위원회는 신청 받은 제도를 통해
 소관부서에 처리방향을 제시합니다.



5

제공받은 사전컨설팅, 의견제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
 소관부서에서는 수용, 불수용, 종결*의 세가지 결론 중 처리 결과**를
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.



6

* 종결사유 : 요건 불비, 자료 보완 불이행, 공무상 비밀 등 민원처리 예외사유 등
 ** 처리기한 : 권익위원회 배정일부터 60일(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60일 연장 가능)

이처럼 적극행정 국민신청은
 국민이 사전컨설팅,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
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
 제도입니다.

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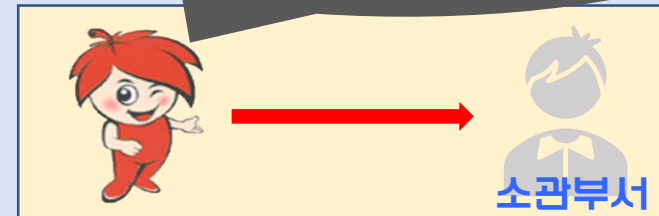


적극행정 국민신청
 - 사전컨설팅
 - 적극행정위원회

* 대상과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

8

사전컨설팅 의견대로 민원을 조치한다면
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
 정하여 추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.



민원 사안을 소관부서에 명확하게 배분하고,
 감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절차 덕분에
 민원인과 소관부서 간 고착된 난제들을
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